

제418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0월 24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상정된 안건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1

(00시44분 개의)

○위원장 박주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김소연 증인, 김인규 증인, 김필수 증인, 황성윤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강선우 간사님이, 그리고 김미애 간사님도 의견이 있으시다니까 한 말씀씩 듣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씩 드리면 되겠지요?

그러면 강선우 간사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강선우 위원 김소연 증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고 기술한 내용과 그 다음에 증빙 자료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받은 이메일 원본을 내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음에도 계속해서 그 자료는 내지 아니하고 다른 자료를 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서 11일까지 본인 동기의 랩 방문이 이미 확정이 돼 있었고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출장 일정이었다면 9월 27일에 증인을 빼 달라는 청탁 전화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김인규 증인 같은 경우에는 김소연 증인의 친동생으로서 식약처 국감을 한 그날, 10월 11일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직을 했다는 것이 국회에 증인으로서 출석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필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임상 조작 의혹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여러 가지 수술 스케줄 등을 제출했으나 그것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황성윤 증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식약처 국감 때 출석을 해서 본인은 모른다로 답변을 일관했는데 본인 스스로 불출석사유서에 이전 출석 당시 충분한 소명이 완료됐다는 사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미애 간사님.

○김미애 위원 존경하는 강선우 간사께서 충분히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부터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소연·김인규·황성윤에 대해서는 국회증언 감정법에 따라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만 김필수 증인의 경우에는 외래 및 수술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첨부한 문서 사본에 보면 빼곡하게 8시 50분부터 1시까지, 그다음에 1시 이후에 시간대별로 3건의 수술 일정이 다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는 어려워 보였고 또 따로 신빙성을 확보할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거나 시간을 좀 일정하게 오후 늦은 시간으로 오라고 요청을 해 본다든지 그런 추가적인 요구를 했더라면 모를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이 자료의 신빙성이 약하다고만 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김필수 증인은 제외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고발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방금 들으신 것처럼 3명의 증인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합의를 봤는데 김필수 증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수차례 간사와 위원장이 산만하게 논의를 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더 토론을 이어 가기보다는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표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김소연 증인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들으셨겠지만 식약처에서는 수사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상의 경우 수사 의뢰된 피의자가 외국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이 얘기는 수사기관이 아주 기초적인 작업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 사정까지 좀 고려해 가시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표결을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주민 예, 이견이 있고 그 이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그것은 3명은 제외하고 1명에 대해서지요, 위원장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필수 증인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주민** 4명 전체에 대해서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

○**김미애 위원** 3명은 동의를 하는데 1명만.....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지금 동의해 주신다면 하나하나를 다 안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한 명을.

각각에 대해서 의견을 그러면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김필수 증인에 대해서 추가로 출석 요청을 한 바가 복지위에서 있었습니까?

○**위원장 박주민** 그것은 강선우 간사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우 위원** 저희가 출석 요청을 할 수 있는, 바로 딱 7일 전에 송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3일로 역산을 해 가지고 딱 16일에 그렇게 했었고요. 출석 요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김필수 증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내왔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18일 날,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이주영 위원** 그 사유서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논의는 없었던 건가요?

○**강선우 위원** 그 이후 누구랑요?

○**이주영 위원** 재차 요청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한 번 답변이 오고 그걸로 끝난 상황이었습니까?

○**강선우 위원** 예.

○**남인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주민**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보통 이렇게 불출석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할 때는 증인을 불렀던 위원님께서 물론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듣고도 지금 이 시간에 판단을 같이 내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여당 간사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불출석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의결을, 3명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고 하니까 간사님 간에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고 합의가 안 된 부분을 꼭 여기서 오늘 의결을 해야만 됩니까, 아니면 두 간사님과 위원장님한테 판단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그런 어떤 판단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더 줘 보시지요.

○**김미애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혹시 불출석사유서를 보셨나요?

○**남인순 위원** 못 봤지요.

○**김미애 위원** 이것을 보시면, 저는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후에 시간 변경이나 또 구체적으로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알 만한 그런 소명 자료 같은 게 제출되었으면 그걸 가지고 하면 될 텐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바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취지지요.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인을 신청하신 분의 의견이 가장 존중이 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벌써 한 두세 분 정도가 이미 한 번 더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소연·김인규·황성윤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을 하고요, 김필수 증인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 조치를 거쳐서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양당 간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소연·김인규·황성윤 증인에 대해서 고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고발하기로 한 증인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8인)

강선우 김남희 김미애 김선민 김예지 김 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서명옥
서미화 서영석 안상훈 이개호 이주영 전진숙 최보윤 한지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연광석